국제, ‘코로나 일상’속 필수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방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일상’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 경제 지속을 위한 필수노동자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고, ‘보건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사례를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조명[1)]

개요

-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생활화가 된 ‘코로나 일상’에서, 국가의 경제 지속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하는 필수노동자의 정의를 알아보고 영국과 미국의 필수노동자의 분류 및 보호 방안을 파악

> *** ‘코로나 일상’ 이란?**
> –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위드 코로나 시대(with corona 時代)’를 대체하는 우리말
>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8.24.)

- 또한 대표적인 필수노동자인 ‘보건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중요성 및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보건업 종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구축 노력을 알아봄

필수노동자의 정의

- **(정의)**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봉쇄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범국가 재난상황 등 불가피한 환경에서 경제 유지를 위해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노동자
- **(분류)** 해외에서는 필수노동자를 Key workers, Essential workers, Crucial workers 등으로 표현하며, 국가별로 다음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분류
- **(국내)** 국내에서도 코로나19에 취약한 환경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우리사회의 유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안전확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세부대책을 확정하고 추가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TF가 10월 출범[2)]

1) 출처 : 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20269-covid-19-pandemic-osha-fda-create-safety-and-health-checklistfor-food-manufacturers (원문: Employee Health and Food Safety Checklist for Human and Animal Food Operation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DA, OSHA, Aug 11, 2020)

2) 출처 : 뉴스웍스(20.10.6) ‘.....필수노동자 「사회적가치」 제대로 조명할 때’

주요 국가별 필수노동자·산업의 정의와 분류

● **[영국]** Key workers[3)]

- 정의 : 국가(경제)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 분류

의료 및 사회복지	의사, 의료업 종사자, 돌봄 노동자, 영국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행정 공무원, 헌혈 업무종사자, 내장 이식 전문 간호사 등
교육 및 보육	보육교사, 교사, 방과 후 강사, 교육 전문가, 유지보수(청소, 식당)종사자 등
핵심 공공서비스	교도소·법원·재판소 종사노동자, 종교·자선단체, 장례지도사, 기사(예: 코로나19 관련 보도) 등
식품 및 필수품	식품, 음료 및 생활필수품의 생산·제조·분배·판매·배달 관련 종사 노동자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경찰, 소방관, 국방 및 지구대, 군인, 국경수비대 등
교통(운송)	승객·화물이 육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공익사업 등	은행, 기름·가스·전기·수도분야 종사자, 원자력, 콜센터, IT 및 데이터 인프라, 우편서비스, 택배, 폐기물 처리 노동자 등

- 추가 정보 : 영국 노동력의 약 1/3인 천만 명 가량이('17-19년 기준) 필수노동 산업에 종사하며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음(320여명)

● **[미국]** Essential/Crucial workers[4)]

- 정의 : 필수 기반시설(인프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미국은 연방 또는 주별로 지침(가이던스)을 수립하여 필수노동자를 보호
  - · 지침을 수립 및 보유한 42개주 가운데 미국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에서 수립한 연방지침을 따르는 주는 20개주로 나타남
  - · CISA는 지침을 통해 지역사회의 회복성 확보 및 필수기능의 지속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쇄·제한, △접촉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폐쇄 명령 기간 중에도 필수 노동자들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증진이 중요하다고 언급

이미지 클릭 시 바로가기[5)]

3) 출처: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articles/coronavirusandkeyworkersinteuk/2020-05-15

4) 출처: https://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covid-19-essential-workers-in-the-states.aspx

5) https://www.cisa.gov/publication/guidance-essential-critical-infrastructure-workforce

지침 보유 상황	해당 주(州)
연방 지침 따름	오하이오, 텍사스, 미네소타 등 20개 주
주 자체 지침 수립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일리노이를 포함한 22개 주
지침 미 보유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유타 등 9개 주

· 주(州)자체 지침을 수립한 22개 주의 경우 연방 지침을 참고하되 주 자체의 사정에 맞추어 지침 수립 (예 : 종교단체 및 교회 종사자가 필수노동자인 주가 있는 반면, 카나비스 산업(합법 대마 재배)이 필수노동 산업인 주도 있음)

– 연방·주 지침 내 주요 공통 필수노동자 종사 산업

에너지	전기(발전·분배·전송 시스템, 신뢰성 및 제어 센터 운영, 원자력 시설) 천연가스(가공, 파이프라인 관리 등), 정유(석유 및 가스 시추, 제작, 주유소, 산업 설비 등)
보육	플로리다, 미시간, 뉴저지를 포함한 최소 28개주가 보육업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콜로라도, 텍사스 주는 필수노동자의 자녀 돌봄에 재정 지원 제공)
농업 및 식품제조	농축산물 생산, 음료·식품 제조업, 요식업, 배달업
필수소매업	음식에서 생명의 안전까지 아우르는 모든 것들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으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필수'업종에 포함(식료품, 약국·의약품 판매점, 철물점, 편의점 등)
필수 사업(trade)	에너지, 기반시설, ICT 산업 등의 건설·유지보수·복구, 안전·위생 유지에 필요한 시설구축 관련업, 주택, 사업체 및 병원과 같은 건물 운영
교통(운송)	사람·상품·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해야하며 공급 망에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적응·적용해야하는 산업. 동 분야는 팬데믹 기간 중 복구 및 구호 활동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함

– 필수산업으로 결정된 배경

· (에너지) 미국 에너지 분야 노동자는 전체 노동력의 4.5%(약 680만 명)를 차지('19년 기준)

· (보육) 5세미만 아동 보육업 종사자(약 500만 명)의 50% 가까이는 최소 1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4%가 여성임

· (식품) 2028년까지 음식 및 음료 서비스업에 약 150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미국통계청)

· (소매) 미국 소매업의 고용의 약 79%를 차지하는 4대 직종 : 소매 영업사원, 운전수 및 판매원, 계산원, 창고관리 및 재고담당

코로나일상, 대표적인 필수노동자 : 보건업 종사자

-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국 내 보건업 종사노동자를 위한 개인보호구가 급격히 부족했었음. 이와 같이 팬데믹 발생 시 보건업 종사 노동자 보호책 부족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7])가 이들을 위한 산업보건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는지 명백히 보여줌
  - WHO의 이반 이바노프 박사(Dr. Ivan Dimov Ivanov)는 몇몇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규정이 과거 '공장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진 만큼 보건서비스에 적용시키기 어렵다고 언급
  - 영국 산업안전보건협회(IOSH[8]) 관계자는 국가 산업안전보건법이 보건 분야 또는 사회복지 분야 노동자를 완전히 보호하지 못할 경우 보건업 종사자들이 산재의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

이반 이바노프 박사[6]

- WHO는 보건종사자를 위한 국가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목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권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양질의 좋은 작업 환경 제공

직업병 및 업무성 재해 예방

국가 산업안전보건 표준에 따라 보건서비스 규정 준수

  - 즉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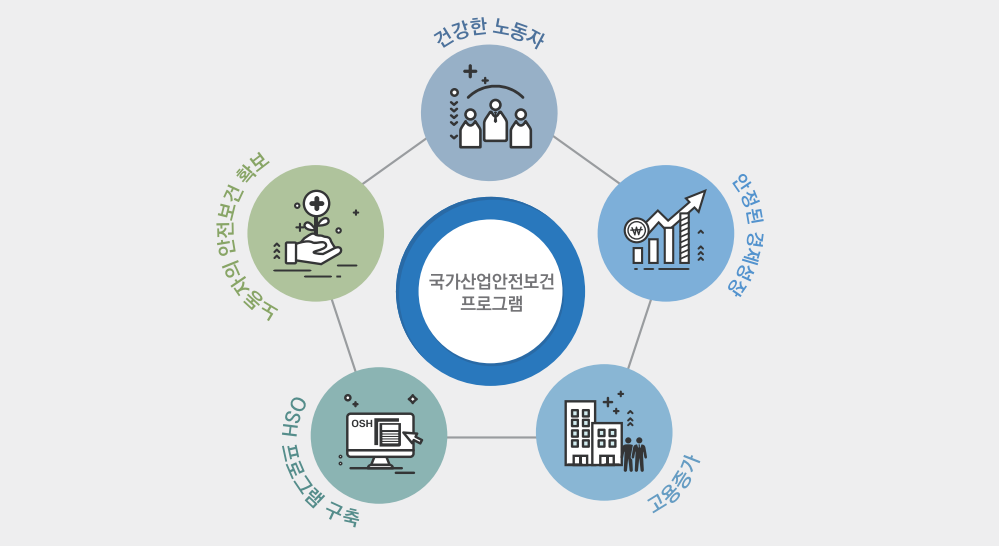

6) 사진출처 : 구글
7)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8)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국가별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구축 노력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보건부는 올해 5월, '보건노동자보호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보호구 지급, 사용법 교육 및 코로나19 검사 및 심리건강프로그램 등을 제공함

· 쥬딧 디아즈 바잔(Dr. Judit Diaz Bazan) 보건부 차관은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이나 이로 인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자' 또는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

· 동 프로그램은 협회, 보건노동자, 사회·민간 기관의 대표가 협력하여 모니터링, 규정개발, 동 계획의 효과 측정 및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강관련 보건업 종사자와 연계함

쥬딧 디아즈 바잔 박사[9]

– **(영국)** 영국 국가의료보험 직원협의체의 건강안전 및 웰빙 파트너십 협력체[10]은 영국 안전보건청(HSE[11])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의료보험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업무표준을 개발함

· 국가의료보험 기관들이 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자료와 우수사례 가이던스 및 지역별 특화된 계획도 개발
(예: 웨일즈 주의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국가의료보험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폭력 감소를 위해 협력)

· 동 협력체의 공동회장인 킴 선레이(Kim Sunley)는 산업보건 고문, 안전보건관리자, 인사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주와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노동조합이 협력하는 것이 동 프로그램의 이점이라고 언급

결론

● '코로나 일상'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아우르는 국가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이 마련 또는 개선되어야 함

– 근로여건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필수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빠짐없이 개선방안에 포함되어야 함[12]

9) 사진출처 : 구글
10) NHS's Staff Council's Health Safety and Wellbeing Partnership
11) Health and Safety Executive
12) 출처 : 뉴스웍스(20.10.6) '.....필수노동자 「사회적가치」 제대로 조명할 때'

출 처 :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국제안전보건동향 2020. 11월호 제479호
※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